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193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입법 배경 및 필요성	2
2. 주요 내용	4
3. 총괄 검토	6
4. 법안별 검토	10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지방자율성 제고 관련 조문 정비	10
(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4)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6
(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8

나. 산림청 소관 지방자율성 제고 관련 조문 정비	31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다. 산림청 소관 자치입법권 강화 관련 조문 정비	38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4
(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정부 제출

나. 제 안 일 : 2024. 6. 28.

다. 회 부 일 : 2024.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등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공단지 등의 지정·승인 사실, 축산업 허가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입법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초고령화, 청년인구 수도권 집중 등으로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방소멸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음.

정부는 인구감소 대응과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낙후 지역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최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지방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데, 특히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정책 추진이 요구됨.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에는 제도적으로 제약이 있으며, 현행 법체계 속에서 실천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¹⁾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법제처 주도로 2023년 1월부터 관련 법령 780여건을 전수 조사하고,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지역 현장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였

1) 하혜영,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23.

으며, 2023년 10월 27일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²⁾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이라는 의제로서 보고하였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 협업으로 법령의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한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는바,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i)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ii)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대한 국가 관여를 최소화하여 지방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서 16개 부처 소관의 85개 법률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음.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개정 대상 법률은 「농어촌정비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5개 법률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산림청 소관 5개 법률의 총 10개 법률임.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해당 내용의 법률안이 정부제출안(의안번호 2125461)으로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2024. 5. 29.)되었고, 제22대 국회에서 동 법률안이 새로이 제출되었음.

2)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협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2. 주요 내용

총 10개조로 이루어진 동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5개 법률과 산림청 소관 5개 법률을 일부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5개 법률의 일부개정 】

조	법률	일부개정 내용	
제1조	농어촌정비법 (제54조제3항·제59조제5항· 제78조제3항·제116조제2항· 제119조 제목 및 제항 개정)	현행	생활환경정비계획, 농공단지의 지정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
		개정	‘보고’ → ‘통보’
제2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개정)	현행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개정	‘승인’ → 개설에 관한 사항 ‘제출’
제4조	동물보호법 (제86조제5항·제94조제4항 개정, 제94조제5항 신설)	현행	동물보호 시설 점검 결과, 실태조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
		개정	‘보고’ → ‘통보’
제5조	말산업 육성법 (제26조제1항 개정)	현행	말산업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
		개정	‘보고’ → ‘통보’
제10조	축산법 (제28조제3항· 제42조의13제2항 개정)	현행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및 허가·등록 현황,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
		개정	‘보고’ → ‘통보’

【 산림청 소관 5개 법률의 일부개정 】

조	법률	일부개정 내용	
제3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신설)	현행	-
		개정	지자체장이 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비용미납자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제6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2항 개정)	현행	지자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함
		개정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모두 위임
제7조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 개정)	현행	지자체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함
		개정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모두 위임
제8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제3항 개정)	현행	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사항을 지자체장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
		개정	‘보고’ → ‘통보’
제9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개정)	현행	①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 전 지자체장이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② 지자체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의 입장료 등에 관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개정	① ‘승인’ → ‘통보’ ②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모두 위임

동 법률안 10개조의 내용은 크게 i) 사전 승인·협의 및 보고 등 사항의 통보사항으로의 전환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에 대한 자율성 확보, ii) 조례 위임 근거 마련 및 조례 규정사항에 대한 법령상 기준 삭제를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3. 총괄 검토

가. 지방자율성 제고: 승인·협의 및 보고사항의 통보사항 전환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에의 승인·협의 및 보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국가가 수임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승인·협의 및 보고 등으로 통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나,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승인·협의 및 보고를 거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통제 아래에 두는 것은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협의 및 보고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제재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만큼, 이들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

관련하여 보고와 통보는 국가에 알린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보고란 사무절차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인 반면, 통보는 수행결과만을 알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함.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보고가 통보보다 강력하게 자치권에 대하여 간섭한다고 볼 수 있음.³⁾

승인과 협의 역시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국가의 사전적 관리 및 기준·방향 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 수행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승인·협의 및 보고 등을 통보 또는 의견 제출 요청 등으로 전환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사후적 관리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관여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개정안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가 보다 대등하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에 있어 자율성이 제고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바,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3)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 관계 재정립 방안 연구 : 승인·협의·보고 등에 관한 법령 정비를 중심으로」, 법제처·한국비교공법협회, 2018, p.67.

나. 자치입법권 강화: 조례의 법령상 제정기준 삭제 등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관한 입법기능으로서, 지방자치에 필요한 법규를 스스로 정립하는 권능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결정·집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정에 맞게 규범을 정립하는 자치입법권의 보장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임에도 관행적으로 상세 규정을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라도, 법률을 근거로 그 위임사항을 직접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입법권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음.⁴⁾

또한,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규율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 역시 적지 않음. 이러한 통일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 또는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조문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수행 사무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

4) 하혜영,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23.

에 대하여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줄임으로써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을 통하여 조례 제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문제에 대하여 실정에 맞는 자치입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4. 법안별 검토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지방자율성 제고 관련 조문 정비

(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생활환경정비계획 등의 승인, 농공단지 지정·승인, 이 법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취소 및 농어촌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현행	개정안
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①·②(생략)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④~⑥(생략)	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 <u>통보</u> -----. ④~⑥(현행과 같음)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④(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④(현행과 같음) ⑤ ----- ----- ----- ----- <u>통보</u> ----- --.

현행	개정안
제78조(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① · 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제78조(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통보</u> ----- -.
제116조(허가 취소 등) ①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16조(허가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통보</u> -----. ③ (현행과 같음)
제119조(보고 및 출입·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119조(<u>통보·보고 및 출입·검사</u>) ① ----- ----- ----- ----- <u>통보</u> -----. ② ~ ⑥ (현행과 같음)

생활환경정비계획 등의 승인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상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는 농어촌마을 건설사업·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등을 뜻함.⁵⁾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되, 다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⁶⁾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 라.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 마.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 바. 빈집의 정비(빈집의 철거·개량·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 아. 치산녹화(治山綠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 차.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 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
 - 카.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농어촌정비법」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농어촌공사
 - 1의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제2조제10호가목,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2.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이하 “주택건설 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4.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i)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및 성과 목표 등을 포함하는 생활환경정비계획⁷⁾을 세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⁸⁾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시·도지사가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승인한 경우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통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ii) 현행법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등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⁹⁾

7) 「농어촌정비법」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2. 성과 목표 및 지표
3. 농어촌마을의 건설·재개발·정비 등 개발에 관한 사항
4. 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
5.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주택의 개량에 관한 사항(제2조제10호차목에 따른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한다)
7.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생활환경기반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8. 교육·문화·복지 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공단지 등 농어촌산업 육성 및 다른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 용수 및 배수 시설의 정비·개발
11. 농어촌마을 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농어촌정비법」 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세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생활환경정비사업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 대상 면적에서 이루어지는 농어촌마을의 건설·재개발 사업인 경우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생활환경정비 시행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⁰⁾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9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세운 생활환경정비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시·도지사가 동조 제3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 이를 시·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통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농공단지 지정·승인과 관련하여, 농공단지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9) 「농어촌정비법」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제58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울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고,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7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시·도지사의 승인 대상) 법 제5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사업 대상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의미하는데,¹¹⁾

현행법 제78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공단지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²⁾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하였을 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통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허가 취소 등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116조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사정이 바뀌어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등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³⁾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12) 「농어촌정비법」 제78조(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농어촌지역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공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한다.

13) 「농어촌정비법」 제116조(허가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원상회복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등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한 경우에 중요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통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보고 및 출입·검사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119조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농어촌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통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종합적으로, 최근 인구의 급감과 고령화 등 농어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환경정비·농공단지 개발·농어촌정비사업 등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법이 사무수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통보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식으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맞는 입법조치로 보임.

가. 제26조제1항·제43조제2항·제57조제1항에 따른 인가

나. 제23조제1항·제1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다. 제9조제7항·제14조제2항·제24조제1항·제54조제1항·제57조제2항·제59조제2항·제78조제1항·제82조제2항·제83조제2항 또는 제96조제2항에 따른 승인

라. 제95조제2항·제101조제4항에 따른 지정

2. 사정이 바뀌어 농어촌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9조제8항·제61조·제82조제2항·제83조제2항 또는 제9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영도시농업농장과 관련하여 개설·업무규정 변경·폐쇄하려는 경우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제출 또는 통보’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4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지사는 <u>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③ <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이하 “개설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u>업무규정을 변경하려면</u>	제14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공영도시농업농장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여야</u> -----.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u> ④ ----- ----- <u>공영도시농업농장</u>

현행	개정안
<u>미리 개설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u>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영도시농업농장을 폐쇄하려면 <u>폐쇄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개설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u>업무규정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미리 통보하여야-----.</u> <u>-----통보하지 아니할-----.</u> ⑤ ----- ----- -----<u>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폐쇄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u>.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영도시농업공장의 <u>개설기준, 공영도시농업농장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의 제출 및 수정·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u> -----.

공영도시농업농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도시지역의 공유지 중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개설하는 농장임.¹⁴⁾¹⁵⁾

1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지역에 위치한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다.

15)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3년 기준 공영도시농업농장은 전국 157개소(125ha)임.

현행법은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업무규정 변경·폐지와 관련하여 개설자가 시·도지사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시·도지사에게 미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미리 제출 또는 통보하도록 개정하되, 다만 개설과 관련해서는 기존 승인권자가 제출받은 공영도시농업농장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영도시농업농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지 중 경작에 적합한 부지를 미리 확보하고, 관리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여 개설·운영하는 농장으로, 통상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확보한 후 개설하므로 승인 절차가 없이도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공영도시농업농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¹⁶⁾로 볼 수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16)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개정안은 제출한 공영도시농업농장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향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업무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승인제도 역시, 개설에 관한 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승인을 받는 대신 미리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도의 연계성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생각됨.

다만, 안 제14조제6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영도시농업공장¹⁷⁾의 개설기준, 공영도시농업농장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의 제출 및 수정·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임.

17) ‘공장’을 ‘농장’으로 변경하는 자구정리가 필요해 보임.

(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자 및 반려동물 생산업 등 영업자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와 실태조사에 포함되는 정보의 실적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86조(출입·검사 등) ① ~ ④ (생략)	제86조(출입·검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관할 시·군·구의 점검 결과를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⑤ ----- ----- ----- ----- ----- <u>통보</u> -----.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 ③ (생략)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u> 은 제1항 각 호의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④ <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u> ----- ----- ----- ----- ----- <u>통보</u> -----.
<신설>	⑤ <u>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u> 은 제1항 각 호의 실적을

현행	개정안
	<u>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점검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¹⁸⁾에 대하여 시설기준·운영기준 등의 사항 및 동물보호를 위한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1년에 1회 이상 정기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¹⁹⁾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반려동물 생산업·수입업·판매업·장묘업·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영업자²⁰⁾에 대하여

18) 「동물보호법」 제37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 「동물보호법」 제86조(출입·검사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운영자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제2호에 따른 보호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제37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운영기준 등의 사항 및 동물보호를 위한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20)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1년에 1회 이상 정기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²¹⁾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와 반려동물 생산업 등 영업자에 대하여 점검한 경우 그 결과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통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동물의 보호·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국가소유 봉사동물²²⁾의 마릿수 및 해당 봉사동물의 관리,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제73조(영업의 등록) ①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동물전시업

2. 동물위탁관리업

3. 동물미용업

4. 동물운송업

21) 「동물보호법」 제86조(출입·검사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7.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제7호에 따른 영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제70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의 준수 여부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제69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78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22)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봉사동물”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²³⁾

이를 위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동물의 보호·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은 종전과 같이 관련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통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종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에 각종 자료와 정보를 알리는 것과 관련하여, 그 용어를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업무절차 및 결과를 알린다는 뜻의 보고에서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업무 결과를 알린다는 뜻의 통보로 개정하는 것은,

23) 「동물보호법」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동물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과공표 여부를 정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의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동물의 보호·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6호에 따른 봉사동물 중 국가소유 봉사동물의 마릿수 및 해당 봉사동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4.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와 유실·유기동물 등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6.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7.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현황 등에 관한 사항
8. 제69조 및 제73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및 등록과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9. 제86조제4항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동물의 보호·복지 실태와 관련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부 기관으로 보는 인식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이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협력하도록 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산업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통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보고·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보고·검사) ①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통보하게 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²⁴⁾ 말산업을 소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²⁵⁾ 통계의

24)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말산업 및 말사업자) ① 「말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말의 생산업·사육업 및 유통업

2. 말이용업

3. 말조련업·장제업(裝蹄業)·재활승마지도업 또는 경마운영업 등 말을 이용하거나 매개로 한 서비스업

4. 말의 산물(産物)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약품 또는 향장품(香粧品)의 제조업·판매업

5. 말의 사육 또는 이용 등에 필요한 물품의 제조업·판매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산업에 필요한 부대산업

25) 「말산업 육성법」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작성·관리 및 실태조사,²⁶⁾ 자격제도의 운영²⁷⁾ 및 말산업특구의 지정 및 지원²⁸⁾ 등, 말산업과 관련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산업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업무절차 및 결과를 알린다는 뜻의 보고에서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업무결과를 알린다는 뜻의 통보로 개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에 있어 자율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26) 「말산업 육성법」 제6조(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말사업자, 승마시설 및 승마안전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7) 「말산업 육성법」 제11조(말산업 관련 자격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28) 「말산업 육성법」 제20조(말산업특구의 지정) ① 말산업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

1. 말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말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2. 해당 지역에서 경영하는 말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제22조(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와 시·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② (생략)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정기점검 결과 및 허가·등록 현황을 <u>보고</u> 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통</u> <u>보</u> -----. ④·⑤ (현행과 같음)
제42조의13(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42조의13(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통</u> <u>보</u> -----. ③·④ (현행과 같음)

정기점검 등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²⁹⁾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기점검 등을 한 경우 그 결과와 허가·등록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통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축산환경 개선계획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³⁰⁾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시·도지사가 수립한 시·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통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9) 「축산법」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점검하게 할 수 있다.

30) 「축산법」 제42조의13(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에 점검 등의 결과와 수립한 계획을 알리는 것과 관련하여, 그 용어를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업무절차 및 결과를 알린다는 뜻의 보고에서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업무 결과를 알린다는 뜻의 통보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부 기관으로 보는 인식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이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협력하도록 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타당한 취지로 생각됨.

나. 산림청 소관 지방자율성 제고 관련 조문 정비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산림청에 ‘보고’하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9조(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① · ②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지정 또는 해제 사실을 신속히 <u>시·도를 거쳐 산림청에 보고하여야</u> 한다. ④ (생략)	제9조(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시·도지사를 거쳐</u> <u>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u> -----. ④ (현행과 같음)

재선충병은 크기 1mm 내외의 소나무재선충(이하 “재선충”이라 한다)이 빠르게 증식하여 수분·양분의 이동통로를 막아 소나무류³¹⁾를 고사시키는 병으로서,

그 확산 방식은 매개충³²⁾이 감염목에 산란하면, 해당 감염목에서 성장한

3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소나무류”란 소나무, 해송, 잣나무와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종을 말한다.

매개충의 내부에 재선충이 서식하다가, 매개충이 다른 건강한 소나무류를 섭식할 때 해당 소나무류의 상처부위를 통해 재선충이 침입하는 구조로 감염되어 이루어짐.

따라서 감염목의 이동을 관리하는 것이 재선충병의 중요한 방제 요소 중의 하나이며, 현행법은 원활한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반출금지 구역을 지정하고³³⁾ 내부에서 소나무류를 원칙적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³⁴⁾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32)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 등

3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출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3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①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다.

1. 제11조제4항에 따른 훈증 등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 방식으로 방제하여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

2. 제11조제4항에 따른 파쇄 등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방식으로 방제하여 이동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효 지속기간(2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내에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掘取)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생산된 경우

나.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생산된 경우

다. 그 밖에 포지(圃地) 또는 분(盆)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등 그 생산지역·생산경위 및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산지전용허가·신고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해당 허가·신고지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또는 해제한 경우 이를 산림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업무절차 및 결과를 알린다는 뜻의 보고에서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업무결과를 알린다는 뜻의 통보로 개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에 있어 자율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 산림청장과 협의해야 함을 명확히 하는 한편,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미리 ‘통보’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 · 해제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구역(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 · 해제 등) ① ----- ----- ----- ----- ----- -----. -----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②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목적, 위치·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현행	개정안
③ ~ ⑥ (생략)	<u>경우 산림청장은 필요하면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u> ③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국·공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조성예정지를 미리 지정하는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³⁵⁾ 이는 조성예정지를 미리 지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조성예정지에서 산지·농지의 전용, 수목 벌채, 건축물 신축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수목원 용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임.

i)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을 위해 미리 협의해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는데,

개정안은 범위에 산림청장을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 과정에서 산림청장과 협의해야 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산림청장이 수목원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만큼 이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3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구역(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정변경된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지·농지의 전용
2. 수목의 벌채나 토석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
3. 건축물의 건축
4. 인공구조물의 설치

ii)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통보**하도록 개정하고, 다만 산림청장이 필요한 경우 사후에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관련하여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³⁶⁾, 제9조³⁷⁾, 제10조³⁸⁾, 제12조제2항³⁹⁾ 및 제13조⁴⁰⁾에 따르면,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 수목원 등록, 등록증 발급, 수목원 휴원 신고, 등록의 말소 등의 권한은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⁴¹⁾에 따라 공립수목원인 지방

3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① 시·도지사는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성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3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 ①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관리·전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1. ~ 6. (생략)

38)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등록증의 발급)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목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개원 및 휴원) ② 등록수목원을 6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등록의 말소)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를 하는 경우
2.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수목원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4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2(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255.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수목원의 조성사업이 국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자율성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승인사항을 통보사항으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수행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승인사항이 통보사항으로 전환되더라도 산림청장이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통보사항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의사전달 수단의 부재 등의 문제점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 산림청 소관 자치입법권 강화 관련 조문 정비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비용을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자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③ (생략) <신설>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⑤ (생략)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가로수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⁴²⁾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관리하는 수목으로,

4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가로수를 조성·관리하는 도로의 범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현행법은 기본적으로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승인기간·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³⁾

이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가로수 조성·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가로수 조성·관리 비용미납자에 대한 비용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및 이도(里道)

4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특별시·광역시의 가로수 조성·관리 관련 비용부담 조례 예시 】

지역	관련 조례	비용부담자
서울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8조의2제4항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u>승인을 받은 자</u>
부산	부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	가로수의 조성등의 <u>승인을 받은 자</u>
인천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	가로수 조성 등의 <u>승인을 받은 자</u>
대구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	가로수 조성·관리 등의 <u>승인을 받은 자</u>
대전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0조제5항	<u>승인을 받은 신청자</u>
광주	광주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제4항	가로수 조성 등의 <u>승인을 받은 자</u>
울산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	<u>원인을 제공한 자</u> / <u>피해를 입힌 훼손자</u>

이에 개정안은 비용부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고, 징수와 관련한 혼란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⁴⁴⁾(자연휴양림·산림욕장·치유의 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부 위임’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해당 <u>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수기준⁴⁵⁾에 따라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이하

4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욕장등의 조성)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에 산림욕장·치유의 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의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상지의 경관·위치·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타당성 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이하 “자연휴양림등”이라 한다)의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음.⁴⁶⁾

현행법은 자연휴양림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경우 징수기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부 위임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으로 작용

4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 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1. 국민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8. ~ 11. (생략)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4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할 수 있는 종전의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임.

다만, 자연휴양림은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소유 형태(국유·공유·사유)와 무관하게 자연휴양림을 하나의 시스템⁴⁷⁾에서 예약하고 있으므로, 이용하는 국민이 소유 형태를 구별하여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데, 개정안에 따라 이용료의 징수기준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리 적용하는 경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임.

특히 무료입장과 관련하여 현행법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에서는 국민 및 그 수행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용료의 징수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무료입장 여부·대상이 달라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7) 숲나들e, www.foresttrip.go.kr

(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부 위임’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① (생략)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 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u>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 ----- -----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u>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의 장으로 하여금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⁴⁸⁾

48)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45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5조의9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 중앙행정기관(산림청 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과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지는 만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방산림청장 소속과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구성·운영하거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⁴⁹⁾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의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대해서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조례로 전부 위임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49)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① 지방산림청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른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와 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사망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사망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⑤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⑦ 각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회피·해임·해촉 및 수당에 관하여는 제7조의5부터 제7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각 위원회”로,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그 취지는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종전의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현행법 시행령은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시 제32조의7제2항제2호에서 i)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ii)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iii) 관할 지역의 주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방산림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산림청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다를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역시 동조 제3항에서 동조 제2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르게 할 수 있음.

따라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전국에 일률적으로 같은 사항을 적용할 필요성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보다 존중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개정안의 부칙 제1조⁵⁰⁾에서는 동 법률안에 따른 개정규정 중 당해 개정규정만을 다른 개정규정과 달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개정규정이 단순히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형식을 개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새로이 제정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조례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당해 개정규정에 대하여 동 법률안의 다른 개정규정보다 더 긴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설정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⁵¹⁾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임.

참고로, 현재 우리 위원회에 “산림재난방지법안”⁵²⁾이 계류 중에 있는데, 해당 법률안은 안 제21조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 부칙 제10조에서 현행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근거규정인 「산림보호법」 제45조의9를 삭제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될 경우 동 조항이 삭제될 수 있음.

5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 제54조제3항·제59조제5항·제116조제2항·제119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10조 중 「축산법」 제28조제3항·제42조의1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51) 관련하여 국회 법제실은, 공포한 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은 공포 후 시행까지 국민이나 시행기관에게 법률의 시행을 알리고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려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통상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사례로 기관의 설립 및 인력의 채용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를 들고 있음.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821.)

52) 정회용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211, 2024. 6. 7. 발의, 2024. 6. 11. 회부

(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공립수목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부 위임’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입장료 등) ① (생략)	제11조(입장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 -----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징수기준 등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⁵³⁾

현행법은 공립수목원의 경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을

5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입장료 등) ①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부 위임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종전의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공립수목원에 대하여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만 있다면,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예와는 달리 별도의 제약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⁵⁴⁾

그렇다면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에 관한 사항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별다른 제약 없이 조례로 제정하도록 개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징수할 수 있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와 관련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5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수목원 등) ④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427

1. 정비 개요

-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추진
 ○ 법제처 주도로 지역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법령개선과제를 발굴·정비

○ **(자치입법권 강화)** 국가 관여의 최소화가 필요한 자치행정·자치재정 분야의 5가지 주제* 선정, 현행 규정의 형태 및 정비방향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

* (자치행정) △지자체가 소관 사무에 대해 수립하는 계획, △집행적 성격의 자치사무,
 △지자체에 두는 자문위원회,

(자치재정) 지자체가 자기책임 하에 운영할 수 있는 재정에 해당하는
 △사용료·수수료, △기금·특별회계

** (제1유형)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기준이 일률적인 경우

→ 조례로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

(제2유형)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없음에도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여 조례로 위임한 경우

→ 법령상 기준 삭제

(제3유형) 지자체에서 추진하려는 정책 중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어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경우

→ 조례로의 위임 근거 마련

○ **(지방자율성 제고)**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국가 관여 최소화 필요, 자치사무에 관한 사전 승인·협의·보고 의무를 규정한 과제 발굴

- (승인·협의→통보) 중앙행정기관장에 대한 ‘사전 승인’ 또는 ‘사전 협의’를 ‘사후 통보’ 또는 ‘의견 제출 요청’ 등으로 전환

• 특히, 지자체 계획수립 및 사무수행 기준 등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 국가의 사전적 관리 및 방향 제시가 가능한바, ‘사후 통보’로 전환

• 또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자체장에게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사후적 관리 장치 마련

- (보고)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업무절차 및 결과를 알린다는 뜻의 ‘보고’를,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업무 결과를 알린다는 뜻의 ‘통보’ 등으로 전환

* (보고의 사전적 의미)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일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림 (국립국어원 발간 우리말샘)

• 지자체를 국가의 하부 기관으로 보는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관계를 대등하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

2. 정비추진 법령 목록

① 법률(▲(21대) 16개 부처(청) 소관 81개 법률, '23.11.13.~'23.11.15. 국회제출

▲(22대) 15개 부처(청) 소관 80개 법률, '24. 6.27.~'24. 6.28. 국회제출

- 21대 국회 제출된 19건의 법률안 중 1건* 통과, 18개 법률안 임기만료 폐기되어 22대 국회에 다시 제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여성가족부 소관, '24.3.26. 공포)

연번	제명	소관 부처(청)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교육부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정보통신공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7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연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공연법, 도서관법,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문학진흥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9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농어촌정비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말산업 육성법, 축산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산업통상자원부
11	유통산업발전법	산업통상자원부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건복지부
13-1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결핵예방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지체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 22대 국회에서는 기존 1개 법률안에서 식약처 소관을 별도 법률안으로 분리하여 제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13-2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14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수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악취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지하수법,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15	청소년활동 진흥법 * 21대 국회 통과('24.3.26. 공포)	여성가족부
16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건축물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기본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주택법	국토교통부
17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국토교통부
18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촌·어항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 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 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② 대통령령(10개 부처(청) 소관 41개 대통령령, '23.11.16. 공포)

연번	제명	소관 부처(청)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5	온천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6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7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8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9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11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13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15	기초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16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보건복지부
17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1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20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21	수도법 시행령	환경부
2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환경부
2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24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2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26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2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2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29	도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3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3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3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3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3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37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38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39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40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청
4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